

# IFRS 17 수익 인식 체계와 시사점: 보험계약마진을 중심으로

2023. 9. 8(금)



[보험경영분석]

| 공개 2022-10-26 08:22:15

# KB손보, "내년 경상 순이익 현재 대비 두배 기대"

실적 우상향 가속...전분기 대비 3분기 손해율은 상승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의 영향으로 내년 경상 순이익이 현재 대비 약 1.5~2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본도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KB금융지주 보험총괄을 맡고 있는 오병주 상무는 3분기 KB금융지주 IR 컨퍼런스콜에서 "IFRS17를 적용했을 때 KB손해보험은 주요 업권사들과 재무적 영향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순이익 우상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내년 경상이익은 현재 대비 2배 수준까지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nvest chosun

2022.08.19 07:00

# 한화손보, 자본 10배 늘어난다?...

## 손보사 기업가치 변수로 떠오른 IFRS17

한화손보 IFRS17 적용 자본 3조원 공시

현행 회계제도 하에선 2800억원

IFRS17 도입 만으로 기업가치 10배 증가

검증되지 않은 숫자라 기업가치 두고 설왕설래

올해 들어 손보사 수입보험료가 생보사를 뛰어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보사와 생보사의 수입보험료가 각각 25조7717억원, 25조985억원을 기록했다. 한때는 생보사가 손보의 수입보험료보다 수십조원 많게 들어왔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이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더니 이제는 손보사 수입보험료가 생보사를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저축성보험이 줄어드는 사이 손보사의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이 두루 두루 성장했기 때문이다. 보험의 주력이 생보에서 손보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 오피니언

2022.08.11 13:35

## [기고] IFRS17, '폭풍 전야의 고요 vs 때이른 향연'

외국에선 "수익면에서 플러스 요인 없을 것" 차분  
국내에선 "수익 크게 늘어난다" 환호 분위기

지난 8월 5일 Allianz 그룹의 2022년 2분기 결산설명회에서 애널리스트와 경영진 간 컨퍼런스콜이 있었다. 한 애널리스트는 "IFRS17과 IFRS9하의 회계처리에 따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기 순이익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정성적 근거 혹은 이후 전망 방향에 대해 시사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Allianz 그룹 CFO의 대답은 "IFRS17 하에서, 당기 수입이나 순이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의 수입과 순이익일 것이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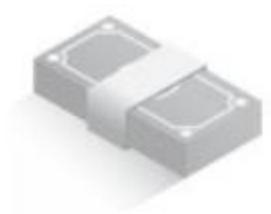
머니투데이

2023.03.25 08:10

# IFRS17으로 손보사 작년 순익보니.. DB, 삼성 제치고 1위

주요 보험사의 2022년 순익 비교 (단위: 억원)

■ 기존 ■ IFRS17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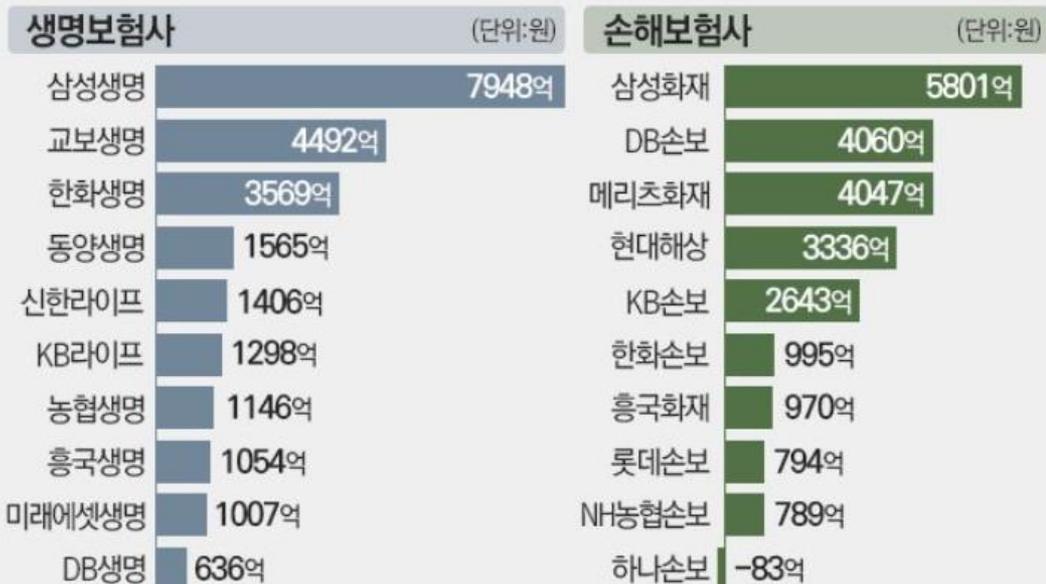


새로운 보험사 자본규제인 IFRS17(새국제회계기준)을 지난해 실적에 적용하면 DB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제치고 손해보험업계 당기순이익 1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IFRS17이 정식으로 도입되는 만큼 손보업계 '리딩컴퍼니' 지위가 요동치게 될지 주목된다.

# 보험사, IFRS17 도입 후 역대급 실적 기록했으나... 논란 나오는 이유는?

주요 생·손보사 당기순이익 총 4조7500억원... 전년비 27.9% 증가  
 일각에선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실적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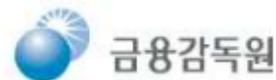
## 보험업계 1분기 당기순이익 \*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료=분기보고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31.(수) 14:00 배포 2023. 5. 31.(수) 13:30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 新제도(IFRS17·K-ICS)상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보험회사 재무제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Invest chosun

입력 2023.06.13 07:00

## '조선사 회계와 다를 바 없다'..올해가 보험사 CFO 무덤 되나

금감원, CSM 논란 지속되자 보험사 CFO 소집

보험사 실적 변동성 커지며 주가 타격입고

업계선 분식회계 논란으로 번질까 '우려'

'실적 부풀리기' 여진 이어지는 가운데 CFO 책임 커져

지난달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23개 보험회사 CF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CSM(미래이익)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차 부원장보는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해 정확한 회계 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해달라”라고 말했다.

회계 처리를 놓고 자칫 ‘분식회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CFO들을 더욱 짓누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실적 전망치가 예상과 지나치게 차이가 날 경우 자칫 분식회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혼돈의 IFRS17-①] 전진·소급 논란 격화...LAT 개정안 땀 달랐다

◇ "LAT 개정안은 소급적용 하라더니"...금감원 '고무줄 잣대' 원성

## [혼돈의 IFRS17-②] '코리아디스카운트'...철수 고민하는 외국계 보험사

◇ "가이드라인, 본국에 설명할 길 없다"

## [혼돈의 IFRS17-③] CSM도 외부감사 대상...회계법인 분식 거론에 난감

◇ 4대 회계법인이 감사인인데...'분식·조작' 프레임에 신뢰도 ↓

◇ 꺼지지 않는 소송 리스크...보험사·회계법인·주주까지 가능

## [혼돈의 IFRS17-④] 실손보험 영구 적자되나...목표합산비율 100% 함의

## [혼돈의 IFRS17-⑤] 명분 사라진 가이드라인...보험사 예실차 플러스

◇ 실적 착시 원인은 IFRS9...가이드라인 왜 나왔나

◇ 현대해상·KB손보만 예실차 '-'...CSM 자정작용 어디로

 <b>금융감독원</b>		<h1>보도자료</h1>		금융은  하게 소비자는  하게	
<b>보도</b>	<b>2023.7.27.(목) 14:00</b>	<b>배포</b>	<b>2023.7.27.(목)</b>		

##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 개최

- 첫째,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서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
- 둘째, '23.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

한국경제

입력 2023.08.10. 오후 5:04

## "IFRS17 적용때 **보험사가 직접 CSM 산정해야**"

IFRS재단 "금융당국이  
계리적 가정 수치 정해  
보험사에 강제한 사례 없어"

일각에선 IFRS17의 기본 원칙이 자율과 책임인데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IFRS재단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재단은 이메일 답변에서 "IFRS17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계리적 가정 등을 사용할 때)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판단 근거와 적용 결과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 (한국 금융당국의 공통 가이드라인에) 추가적 논평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IFRS17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IFRS17이 적용되는 일반회계기준(GAAP)이 아닌 각국 감독당국이 정하는 감독회계기준(SAP)에 관한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합당한 명분이 있다면 GAAP를 별도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 1-1 IFRS 17 제정 배경

-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 제공, 보험사 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제고
  - 타 산업과 일관성 있는 기준 제공, 산업 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제고
  - 재무정보이용자의 보험사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에 대한 이해가능성 제고
-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보험산업 및 경제발전 도모

### ※ IFRS 4(과거)

#### ◆ 각국의 회계관행 허용

- 과거정보 기반 보험부채 측정(원가평가)
  - 보험료 수취 시 수익 인식(현금주의)
  - 보험 및 투자이익 원천 파악 곤란
  - 보험산업의 특수한 회계처리 인정
- ⇒ "보험사 재무제표, Black Box"

### ※ IFRS 17(2023 시행)

####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 최근정보 기반 보험부채 측정(시가평가)
  - 서비스 제공 시 수익 인식(발생주의)
  - 보험 및 투자이익 원천 파악 가능
  -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 증가
- ⇒ "보험사 재무제표, 이해 용이"

## [참고]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현금주의(cash basis)

VS.

발생주의(accrual basis)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이 나가는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수익 = 현금 유입  
비용 = 현금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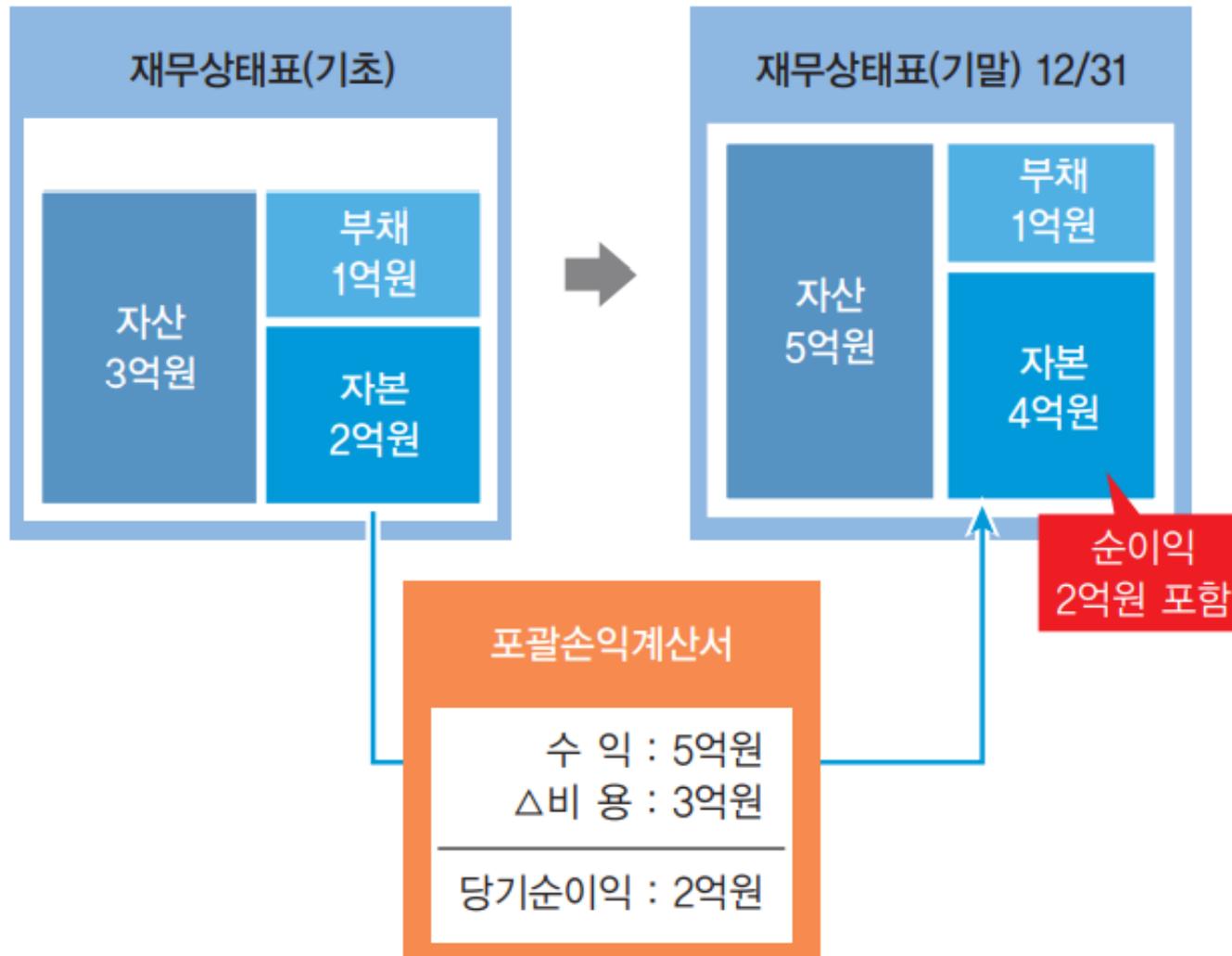
현금의 실질적인 유출입과는 별도로 그러한 거래를 유발시키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관련되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수익 = 수행의무 이행  
비용 = 수익/비용 대응\*

\* 수행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비용으로 대응

cf. (HSY) 기업 간 관계/Bargaining Power (ex. 현대자동차 vs. 부품사)  
→ 현금주의 사용 시 재무정보 왜곡 가능성 크게 증가

## [참고] 재무상태표 및 재무성과표 관계



## 1-2 보험부채 평가

### ※ IFRS 4(과거)

#### ◆ 평가방법(원가평가)

- 최초 보험계약 시 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이율 등)을 전 보험기간에 동일 적용

#### ◆ 구성요소

- 미래현금흐름 = 보험금 - 순보험료
- cf. 사업비 제외
- 할인율: 예정이율

부가보험료

할증

사업비

순보험료

안전할증

보험금

### ※ IFRS 17(2023 시행)

#### ◆ 평가방법(시가평가)

- 결산시점 현행추정율(실제위험률, 시장 이자율) 재산출, 적용

#### ◆ 구성요소

- 미래현금흐름 = 보험금 + 사업비 - 영업보험료
- 할인율: 결산 시 시장이율
-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 관련 불확실성
-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 장래예상이익 현가

영업보험료

보험계약마진

위험조정

잔여보장부채  
(보험금+사업비)

## 1-3 보험손익 인식

### ※ IFRS 4(과거)

#### ◆ 보험수익(현금주의)

- 수취한 보험료 전액(투자요소 포함)

#### ◆ 수익/비용구성

- 수익: 실제수입보험료

- 비용: ①+②

- ① 실제보험금\*, 실제사업비\*\*
- ② 책임준비금 전입액

\* 위험보장 무관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포함

\*\* 신계약비 전액, 이연자산 계상 후 7년 내 상각

### ※ IFRS 17(2023 시행)

#### ◆ 보험수익(발생주의)

- 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배분된 예상보험금·  
예상직접사업비(투자요소 제외)

#### ◆ 수익/비용구성

- 수익 : ①+②+③

- ① 예상보험금·직접사업비(최선추정부채)
- ② 위험조정 변동
- ③ 보험계약마진 상각

#### ◆ 비용: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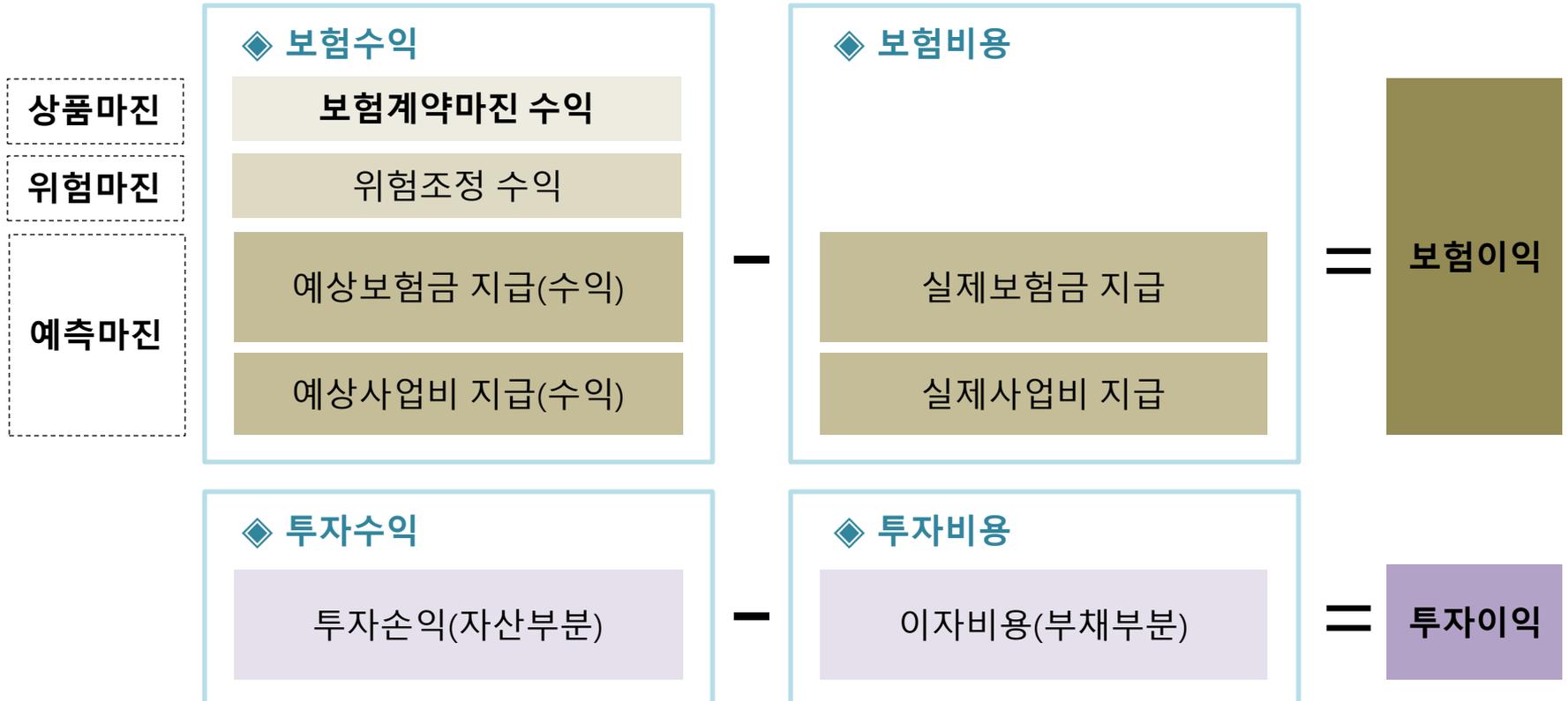
- ① 실제보험금\*, 직접사업비\*\*
- ② 간접사업비

\* 위험보장 무관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제외

\*\* 직접신계약비만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비용 인식

## 1-3 보험손익 인식

- IFRS 17, 보험서비스와 투자서비스 구분, 발생원천별로 당기손익 보고
- 보험이익의 경우 상품마진(보험계약마진), 위험마진(위험조정), 예측마진(경험조정)으로 세분화  
→ 보험사 손익정보 유용성 제고



## 2-1 IFRS 17 기준서

- [개념] 보험계약마진(이하 CSM),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38]
- [최초 측정] 포트폴리오(유사한 위험 노출, 동일 관리 [14]) 하 **계약집합**(손실 가능성 [16]) 단위
- [후속 측정] 신계약, 이자율, 미래 서비스 관련 현금흐름 변동, 외환차이 등 영향 반영[44]  
cf. 기초 CSM → (+)이자 부리 → (+/-)후속 측정 관련 조정 → (-)CSM 상각 → 기말 CSM

- [상각] 보험계약 집합에서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B119]
  - (step 1) 집합 내 **보장단위** 식별 및 산정(급부 수량 및 기대 듀레이션 고려)
  - (step 2) CSM을 **당기 제공 보장단위와 미래 제공 (기대)보장단위**에 동일 배분
  - (step 3) 당기 제공 보장단위, **당기손익**으로 인식

### ※ 보장단위 해석[BC279]

- IASB는 "보험보장 서비스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공(즉, 보험금 지급 시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장기간에 걸쳐 제공된다"는 점에 주목

cf. 기대현금흐름 양식: 이행의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목적적합하지 않음(∵ FCF에 이미 반영)

## 2-2 IFRS 17 이행준비그룹(TRG) Agenda

### ■ 2018.2월 Agenda

- 보장단위 결정 시 i) **기대만기변동영향**은 반영 필요, 2) **예상보험금(CF)**은 반영 부적절
- 보험계약에서 제공된 급부, 보험회사가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별) **최대보장금액**'으로 해석  
→ (IASB) 결론 유보[기준서 상 '급부의 양'을 편협하게 해석, 투자요소 미고려]

### ■ 2018.5월 Agenda

- 급부 양 결정 시 보험사가 부담하는 기대비용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제공받게 될 기대효익 고려  
*"계약자는 보험사가 유효한 보험금 청구에 응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효익을 얻는 것이며, 보험사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의 청구로 효익을 얻는 것이 아님"*
  - 보험서비스를 반영하는 모든 방식 가능
    - 1) 각 기간의 **계약상 최대보장금액**
    - 2) 각 기간 별로 보험사건 발생으로 **계약자로부터 유효하게 청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금**
- cf. 보험료(보험사 마진 포함), 기대현금흐름(보험금 청구 확률 반영)에 기초한 방식은 부적절

## 2-2 IFRS 17 이행준비그룹(TRG) Agenda

### ■ 2019.3월 Agenda

- 투자요소, **보험사건 미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A 용어정의]
- **보험사건 발생 여부와 무관**(regardless)하게 모든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환급될 요소  
e.g., 해지불능 생명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사망 또는 만기 지급), 투자요소 해당
- 투자요소가 보험요소와 밀접한 상호연관 없는 경우, IFRS 9 적용(금융상품 처리)
- 투자요소가 보험요소와 밀접한 상호연관 있는 경우, IFRS 17 적용(보험계약 간주)  
- CSM 상각 시 고려하되, **지급액이 결정되는 시점의 투자요소의 현재가치**로 평가

### ※ (요약) IFRS 17 및 TRG Agenda, CSM 상각 기준

- 보험요소와 (분리불가) 투자요소 구분(cf. 분리가능 투자요소, 금융상품 O, 보험계약 X)
- (보험요소) **계약자 기대효익**(e.g., 최대보장급부) 관점, 기대만기변동 고려 O, 보험사건 발생 확률 고려 X
- (투자요소) **보험사건과 무관**하게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현재가치**

## 2-3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군별 CSM 상각기준 예시

### A. 생명보험

상품 구분	보험계약마진 상각 단위		
		보장서비스	투자서비스
〈보장성상품〉			
▪ 투자서비스 無	가입금액	가입금액	-
▪ 투자서비스 有	가입금액	가입금액 - 준비금	준비금
〈연금/저축〉			
▪ 금리확정형	가입금액	가입금액 - 준비금	준비금
▪ 금리연동형	보장금액 + 준비금	보장금액	준비금
▪ 연금(개시 후)	Max(준비금, 연금액)	연금액	Max(준비금 - 연금액, 0)

- 상품구조 상 보장금액이 기간별로 변동하는 경우 **보장금액의 변동 반영**
- 생보사 상품의 가입금액은 **보장서비스의 빈도와 심도를 반영한 지표**이므로, 별도의 환산과정 없이 사용 가능
- 투자서비스 존재 여부 판단은 회사가 세운 기준에 따라 결정
-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연금개시 전)의 보장금액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준비금 외 추가 지급하는 금액 의미
- 종신형 연금의 연금개시 후 준비금은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 지급되는 연금액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의미
- 주계약+특약 구조의 계약은 주계약과 특약의 상각단위를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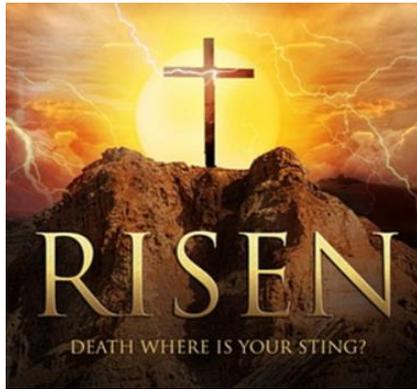
## 2-3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군별 CSM 상각기준 예시

### B. 손해보험

상품 구분	보험계약마진 상각 단위		
		보장서비스	투자서비스
〈보장성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장적립형</li> </ul>	(보장계약) 조정가입금액 + 적립계약준비금	(보장계약) 조정가입금액 - 보장계약준비금	보장계약준비금 + 적립계약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서비스無 (보장적립형 外)</li> </ul>	조정가입금액	조정가입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서비스有 (보장적립형 外)</li> </ul>	조정가입금액	조정가입금액 - 준비금	준비금
〈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장적립형</li> </ul>	(보장계약) 조정가입금액 + 적립계약준비금	(보장계약) 조정가입금액 - 보장계약준비금	보장계약준비금 + 적립계약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확정형 (보장적립형 外)</li> </ul>	조정가입금액	조정가입금액 - 준비금	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연동형 (보장적립형 外)</li> </ul>	보장금액 + 준비금	보장금액	준비금

## 3-1 보험서비스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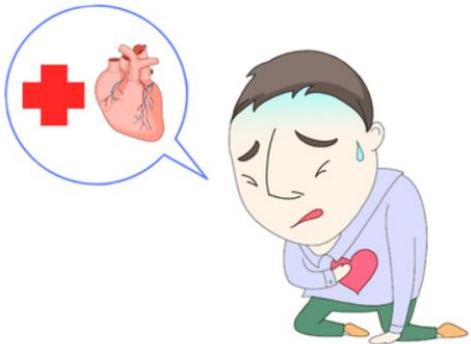
- 종신보험



VS.



- 건강보험



VS.



## 3-2 IFRS 17 上 보험서비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문단 B86~B92)

37.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한다.

후속 측정

40.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이다.

(1) 다음으로 구성된 잔여 보장에 대한 부채(이하 '잔여보장부채')

(가)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나) 보고기간말 시점의 집합의 보험계약마진(문단 43~46을 적용하여 측정)

(2)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부채(이하 '발생사고부채')(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이는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 3-2 IFRS 17 上 보험서비스

### 후속 측정

41.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보험수익: 해당 기간의 **보험계약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문단 B120~B124를 적용하여 측정)
- (2) 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손실의 환입(문단 47~52 참조)
- (3)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42. 발생사고부채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보험서비스비용: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분**(투자요소는 제외)
- (2)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비용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 (3)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 3-2 IFRS 17 上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결과

83.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수익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수익은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문단 B120~B127은 보험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84.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서비스비용은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의 상환 제외), 발생한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및 문단 103(2)에 기술된 그 밖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85.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 투자요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보험료 정보가 문단 83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3-2 IFRS 17 上 보험서비스

### 부록 A 용어의 정의

**보험계약** :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무채(발생사고무채)

다음의 의무를 말한다.

- (1) 이미 발생한 보험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정당한 보험금과 기타 발생한 보험 비용을 지급할 의무. 이러한 사건에는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금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된다.
- (2) 위 (1)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이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기존 보험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의무

### 잔여보장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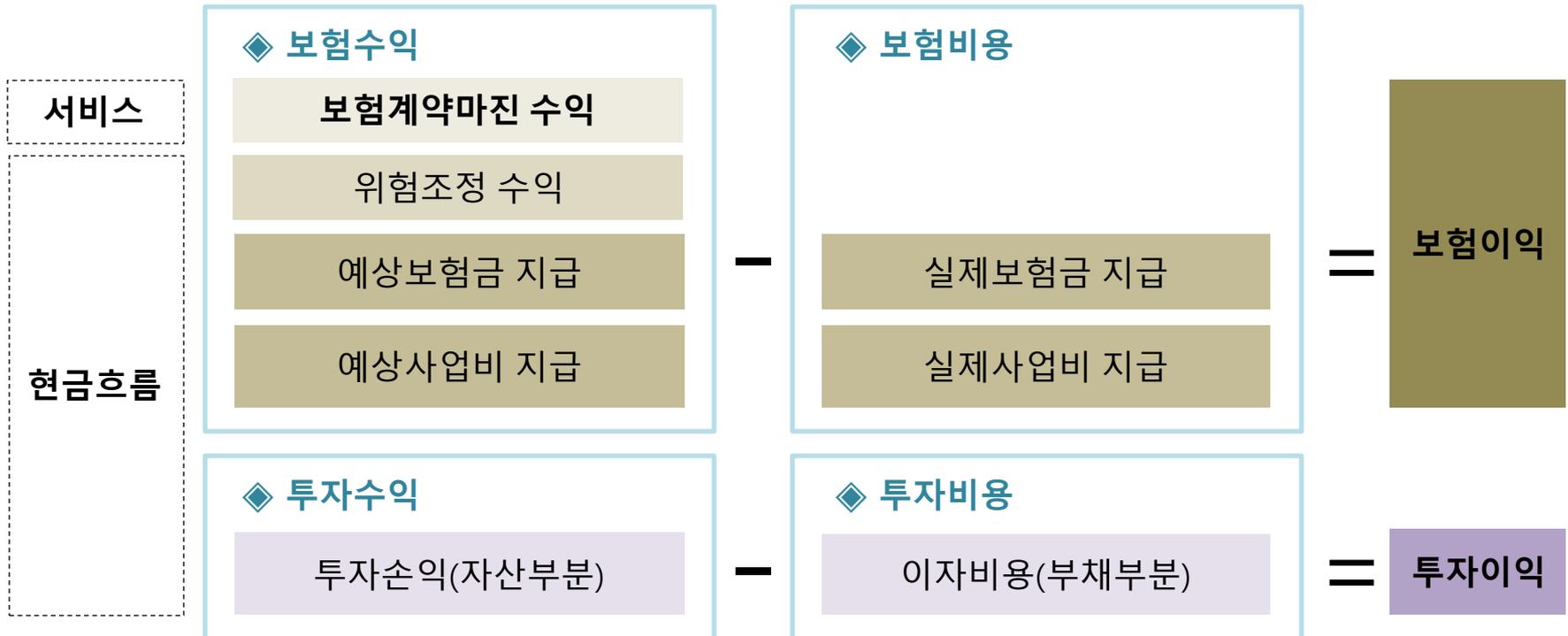
다음의 의무를 말한다.

- (1)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 을 지급할 의무(즉, 보험보장 중 만료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이 있는 의무)
- (2) 위 (1)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이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기존 보험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의무

## 3-3 IFRS 17 수익 인식 체계의 비일관성

- 보험계약마진과 기타 요소(위험조정,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간 **일관성 부재**
  - (CSM) 보험계약자 기대효익 → 서비스(급부) 기반, 보험사건 발생확률 고려 X
  - (기타 요소) 보험사 기대비용 → 현금흐름 기반, 보험사건 발생확률 고려 O
- 투자요소 CSM이 **보험이익**에 반영 → '보험이익 vs. 투자이익' 구분 실익 저하

수익·비용 대응 ↓  
이해가능성 ↓



## 4-1 IFRS 17 수익성 정보

보험계약서비스 제공에 따른 *IFRS* 17 수익성

$$= \frac{\text{보험수익} - \text{보험비용}}{\text{보험수익}}$$

$$= \frac{(\text{보험계약마진 상각분} + \text{위험조정 상각분} + \text{최선추정부채 환입분}) - \text{발생사고부채 인식분}}{\text{보험계약마진 상각분} + \text{위험조정 상각분} + \text{최선추정부채 환입분}}$$

(‘최선추정부채 환입분 ≒ 발생사고부채 인식분’ 가정 시)

$$\approx \frac{\text{보험계약마진 상각분} + \text{위험조정 상각분}}{\text{보험계약마진 상각분} + \text{위험조정 상각분} + \text{최선추정부채 환입분}}$$

변동성 大

## 4-2. 시뮬레이션 분석 가정

### 〈회계적 가정〉

- 주계약만 존재(특약 없음)
- 직접 참가 특성 없음(일반모형(BBA) 모형 적용)
- 최초 인식시점과 후속측정 시점에 손실부담 가능성 없음(손실부담계약 X)
- 예상 이행현금흐름(보험금+사업비)과 실제 이행현금흐름 일치(경험조정=0)
- 금리, 환율 등 금융위험에 따른 영향 없음(보험금융손익=0)
- 신계약에 따른 할인율 효과, 보험서비스 이전 등 기타 조정효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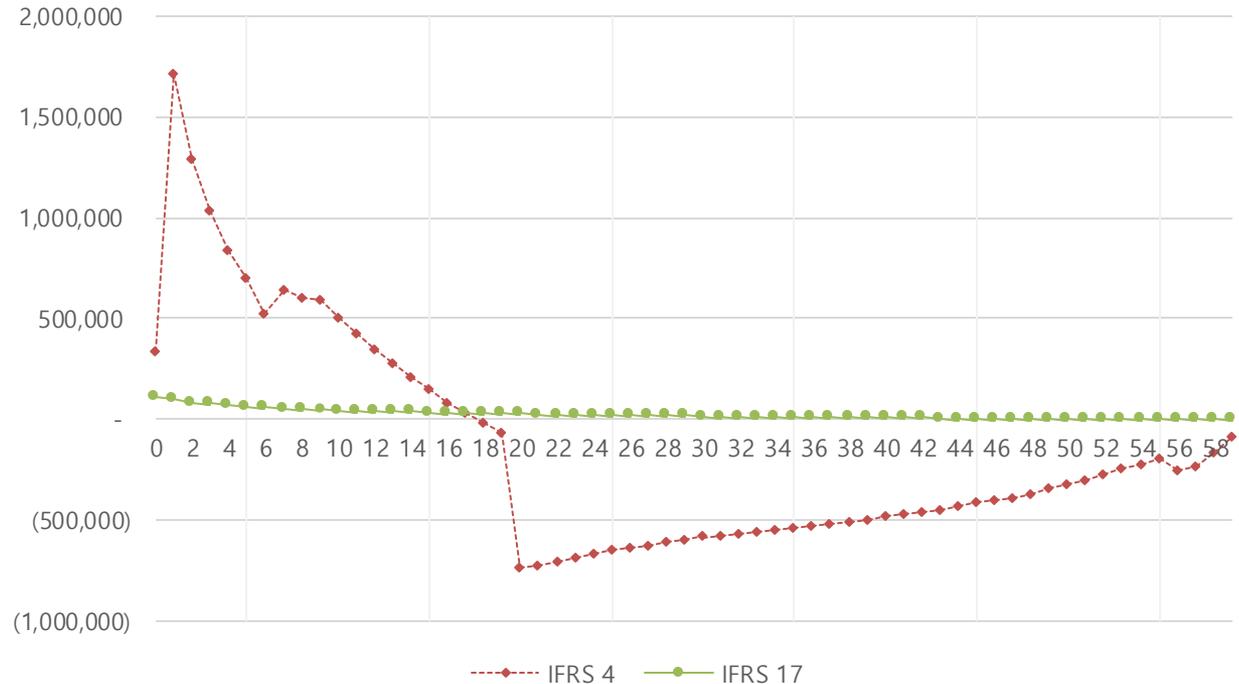
### 〈계리적 가정〉

- 보험계약자 : 만40세 남성
- 사업비 및 해지율 : Appendix 참조
- 참조순보험요율(사망률, 암 발생률, 연금개시 후 사망률) : 보험개발원 참조(대한민국 평균)  
(출처 : <https://www.kidi.or.kr/user/nd81768.do>)

## 4-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 종신보험

- 가입연령 : 40세
- 납입기간 : 20년
- 보험만기 : 100세
- 가입금액 : 100,000,000원
- 월납보험료 : 24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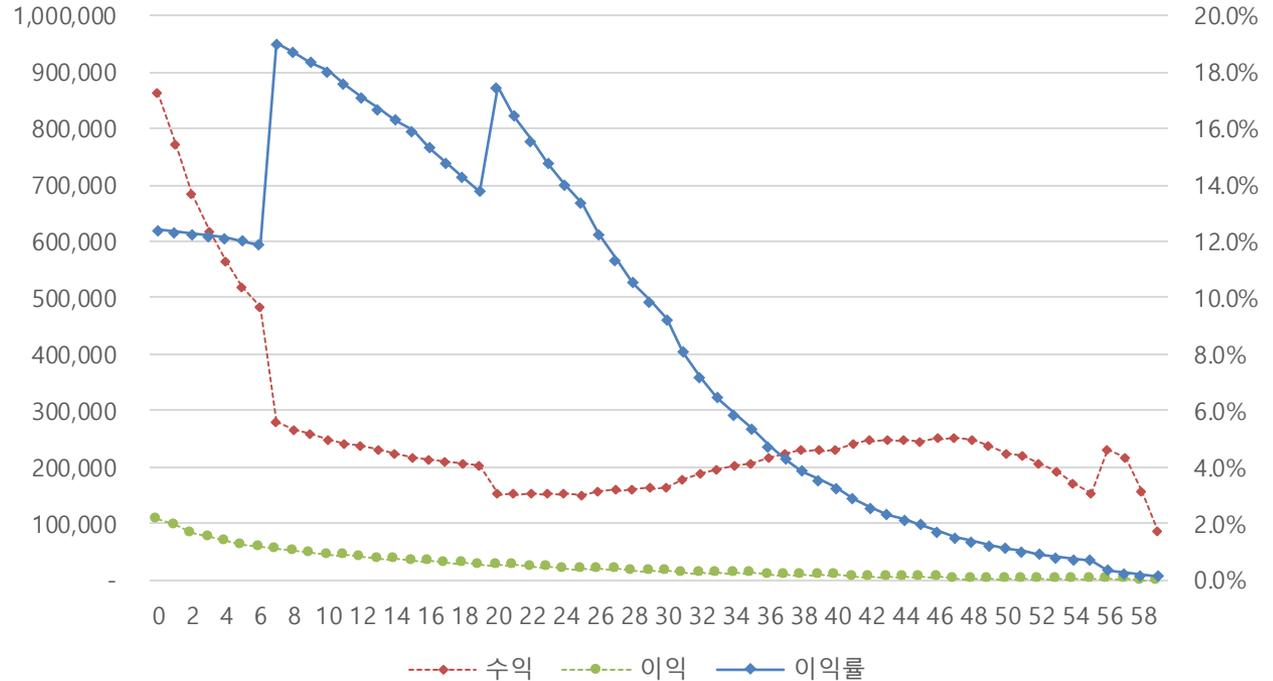


- (IFRS 4) 납입기간 중 이익 발생, 납입종료 후 손실 발생
  - 신계약비 지급 후 유지자 감소, 신계약비 분급 종료 후 사업비 감소, 납입종료 후 보험사건(사망) 증가
- (IFRS 17) 유지자 감소 패턴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나, 전체적으로 안정적
  - 예상과 실제 이행현금흐름(보험금+사업비) 일치, CSM & RA 상각액만으로 이익 결정

## 4-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 종신보험

- 가입연령 : 40세
- 납입기간 : 20년
- 보험만기 : 100세
- 가입금액 : 100,000,000원
- 월납보험료 : 24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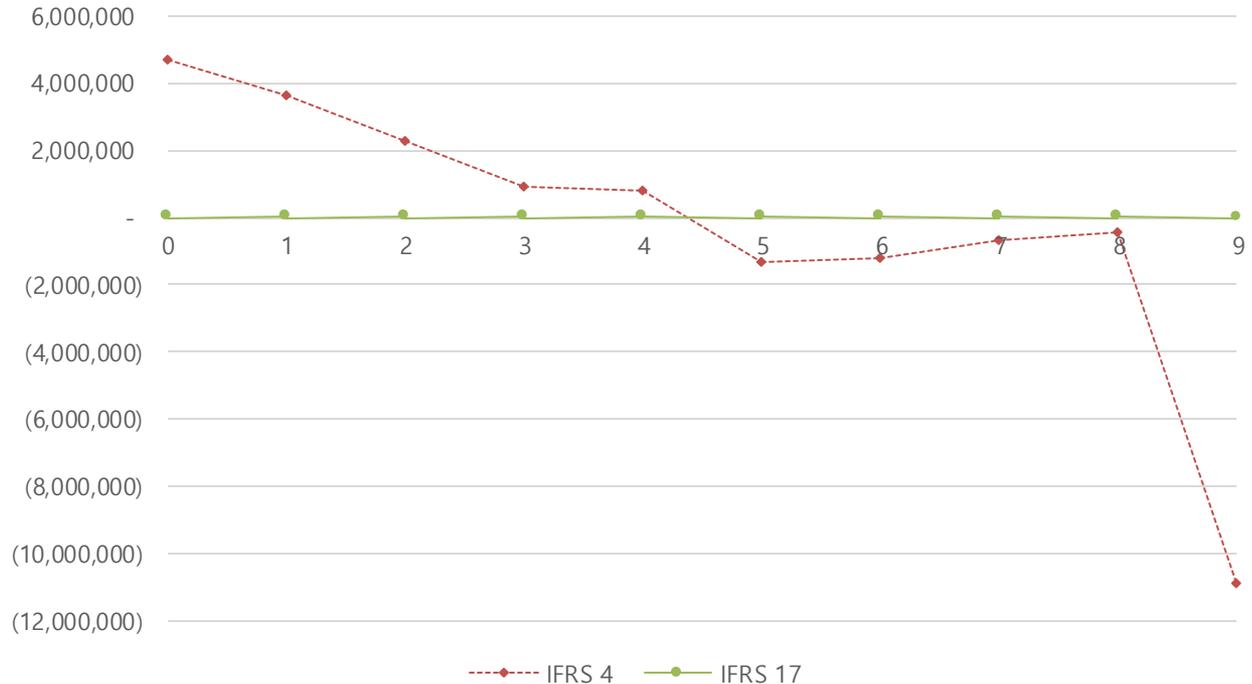


- (경과 0-6년) 신계약비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초기 높은 해지율(유지자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 (경과 7-20년) 신계약비 분급 종료로 인한 사업비 감소, 해지율 안정, 유지자 감소 패턴에 따른 수익 감소
- (경과 21-60년) 납입완료 후 유지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건(사망)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증가

## 4-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 저축보험

- 가입연령 : 40세
- 납입기간 : 5년
- 보험만기 : 50세
- 월납보험료 : 500,000원
- 보험금(사망 시) : 5,000,000원\*  
\* 월납 보험료의 1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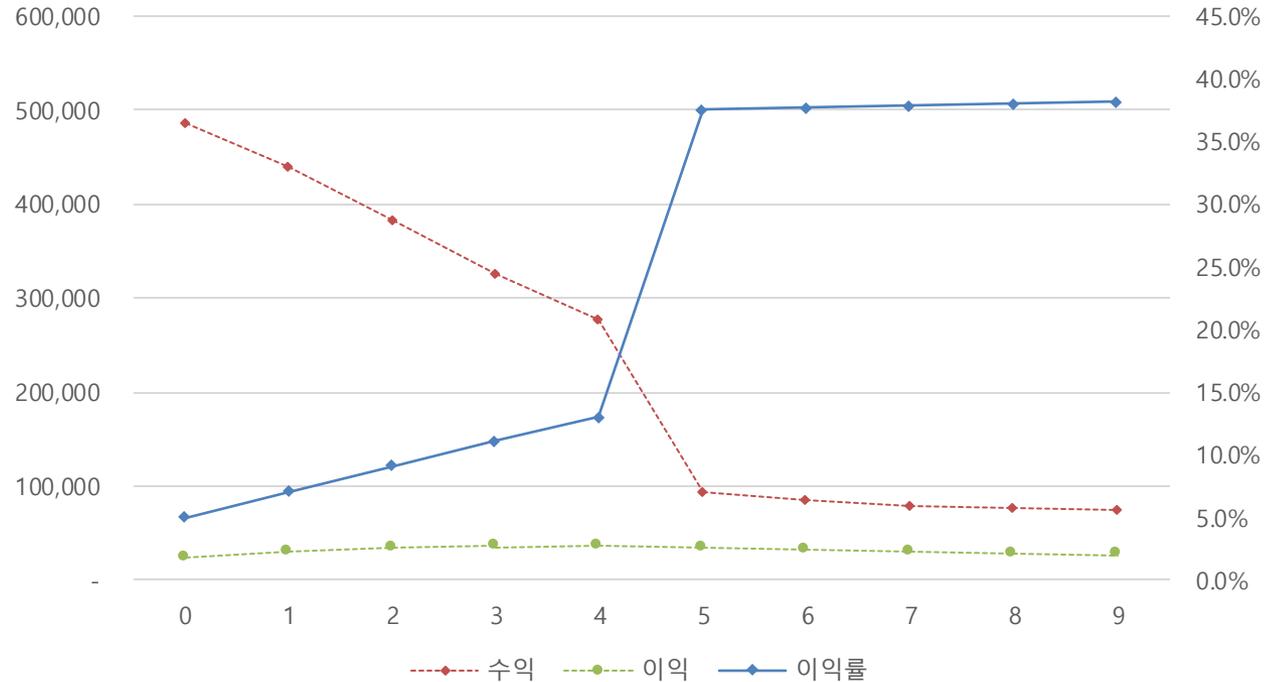


- (IFRS 4) 납입기간(경과 0-4년) 중 이익 발생, 납입종료 후(경과 5-8년) 손실 발생, 만기(경과 9년) 대규모 손실
  - 초기 유지자 감소, 납입종료 후 현금유입(보험료) 없이 해지환급금&사업비 발생, 만기에 만기환급금 발생
- (IFRS 17) 유지자 감소 패턴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나, 전체적으로 안정적
  - 예상과 실제 이행현금흐름(보험금+사업비) 일치, CSM & RA 상각액만으로 이익 결정

## 4-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 저축보험

- 가입연령 : 40세
- 납입기간 : 5년
- 보험만기 : 50세
- 월납보험료 : 500,000원
- 보험금(사망 시) : 5,000,000원\*
- \* 월납 보험료의 1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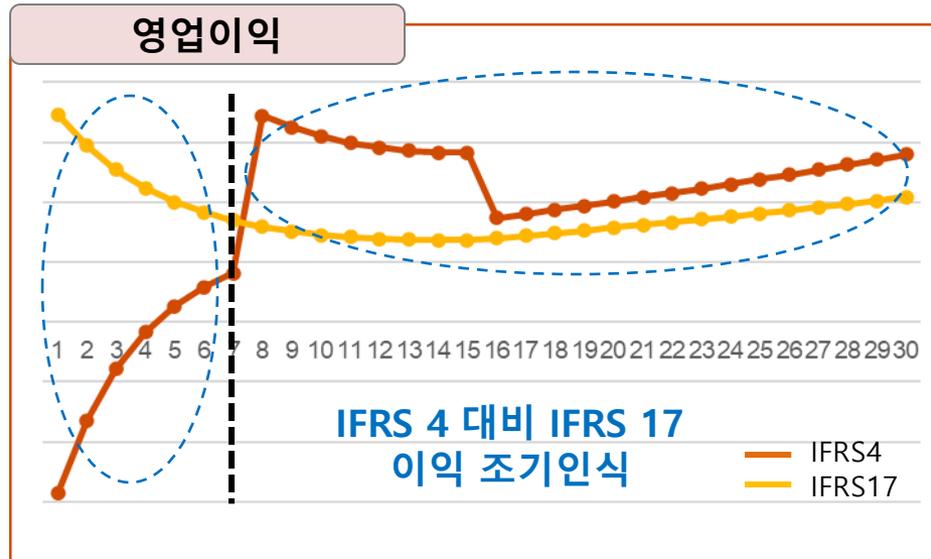


- (경과 0-4년) 납입기간 중 사업비 비중 높음, 초기 유지자 감소에 의한 수익 감소
- (경과 5-10년) 납입완료 후 사업비 감소(CSM, RA 상각이 수익 대부분 차지), 유지자 감소에 의한 수익 감소

## 5-1 [신계약] IFRS 4 vs. IFRS 17 영업이익

- 우리나라 보험상품과 신계약비(보험취득 현금흐름) 특징
  - 보험계약 만기가 길고 보험료 납기가 짧음
  - 신계약비 지급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
  - 많은 경우 집행한 신계약비가 신계약비 이연한도(7년)를 초과
- IFRS 4
  - 계약 초기 신계약비 조기 집행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
  - 신계약비 상각 기간 종료 후 비용 요소 감소에 따라 이익 크게 증가
  - 보험료 납기 종료와 함께 이익 감소 후 시간이 경과하며 위험보험료 증가로 (사차)이익 다시 증가
- IFRS 17
  - 현금흐름 패턴과 무관하게 장래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마진을 CSM(보험계약마진)으로 집계
  - 신계약비 역시 미래현금흐름에 포함되어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비용화
  - 보험서비스 제공(급부 수량)에 따라 CSM 상각,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안정적 이익 실현

## 5-2 [신계약] 시뮬레이션 결과



### [예시상품]

- 30년 만기 15년납 정기보험(순수보장성 상품)
- 예정이율 2.75%, IFRS 17 할인율 EIR 3.0%(곡선)
- 손해율 80%, 유지비율 60%(신계약비 100% 집행)
- 감독규정상 신계약비 개별 이연한도(7년) 적용
- IFRS 4와 IFRS 17 전구간 영업이익 합계는 동일

### [분석]

- IFRS 4에서 초기 7년간 신계약비 조기비용화로 IFRS 17 대비 손실 및 낮은 이익 실현
- IFRS17에서 초기 7년간 전기간 손익 약 30% 인식  
→ **보험 비즈니스 실질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초기 IFRS 4 대비 IFRS 17 이익 크게 증가**
- cf. 순수보장성 상품에서 효과가 더 극대화될 뿐 만기환급형 상품도 동일한 패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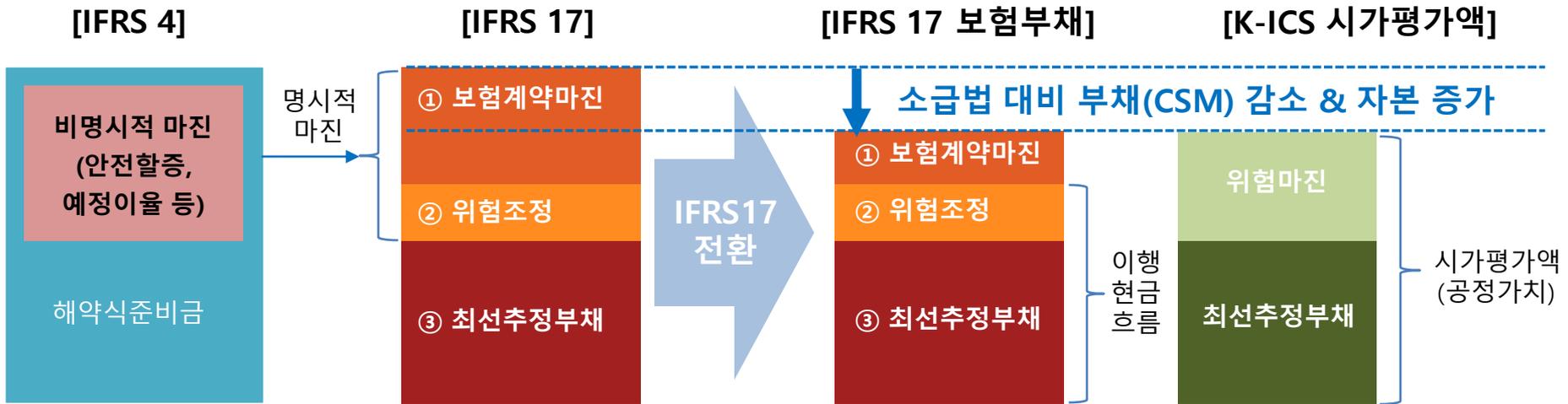
## 5-3 (보유계약) 공정가치법 적용과 전환효과

- IFRS 4에서 IFRS 17로 전환 시 보험계약집합별로 소급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 가능
    - (소급법)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IFRS 17 적용 가정 & 회계처리, 이론적으로 타당  
IFRS 17 적용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 곤란**
    - (공정가치법) 보유계약의 보험부채 장부가액을 전환시점 공정가치로 측정 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이론적 타당성 부족, (과거 소급이 불가피한 경우로) **실무적 필요성 존재**
  - 우리나라 보험사의 보험부채 공정가치(매각 가정) 측정
    - 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K-ICS) 상 보험부채 (시가)평가액을 공정가치 대용치로 준용
    - 공정가치법에서 **CSM**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액에서 이행현금흐름(=BEL+RA)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산출
  - 전환 시 공정가치법 적용에 따른 재무효과
    - 한편, 보험사 자체 분석결과(QIS)에 따르면, 신지급여력제도 상 보험부채 시가평가액(공정가치)이 평균적으로 소급법 적용 시 보험부채 규모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공정가치법 적용 시 보험부채가 감소한 만큼 **CSM이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
- ※ (CSM 감소) 전환시점에 CSM 감소분 만큼 장래이익을 일시에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재무적 효과

## 5-3 (보유계약) 공정가치법 적용과 전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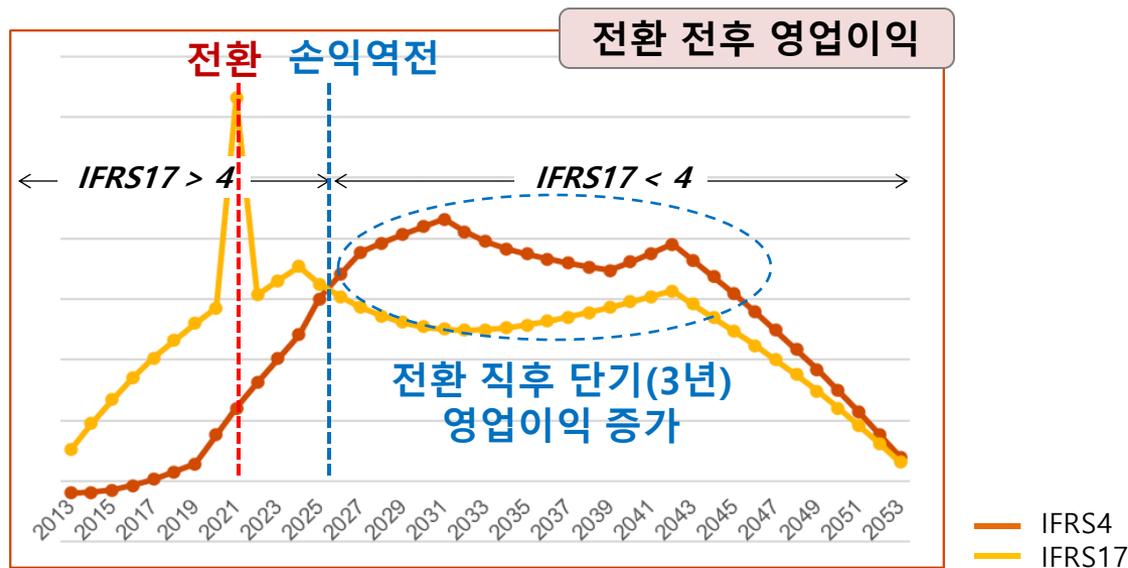
### 소급법 적용 시 보험부채

### 공정가치법 적용 시 보험부채



- 소급 기간이 짧을수록 공정가치법 공격적 적용에 따른 전환시점의 자본 증가 현상 강화
  - 그 결과 장래 인식할 미래이익이 감소하고, 계리적가정 악화 등에 대비할 CSM 부족
    - CSM 부족 시 계리적 가정 악화(예. 해지율 상승) 등 손실부담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 증가
- 전환방법(공정가치법 vs. 소급법)이 보험사 재무현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공정가치법 대상계약을 제한하고, 적용 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한 바 있음

## 5-4 [보유계약] 시뮬레이션 결과



### [시나리오(가정)]

- 과거 10년간 30년 만기 보유계약이 동일 물량으로 인수된 것으로 가정 후 전체 40년 간 손익 비교 (과거 10년간 동일 물량 판매 후 IFRS 17로 전환)
- 공정가치법 전환 시 소급법 대비 CSM 감소 가정
  - 전환시점 RA 대비 CSM 비율 250% 적용 가정
- 전환 이후 1개년 신계약 영업 가정

### [분석]

- 전환시점 IFRS 4 대비 **IFRS 17 자본 증가**
  - 공정가치법 적용 비중 높을수록 자본 증가폭 증가
- 전환 직후 IFRS 4 대비 **IFRS 17 영업이익 증가**
  - 손익 역전시점 전까지 영업이익 평균 45% 증가
  - IFRS17 도입 직후 자본과 이익이 동시 증가
- ※ 수익성 유지 및 손익 역전시점 지연 유인 발생

## 5-5 IFRS 17 시행과 보험사 신계약 판매 유인

### ▪ IFRS 17의 높은 계약 초기 수익성

- IFRS 17, 신계약비 이연상각 효과 & 보험계약마진 상각('기대효익' 관점)에 따른 안정적 수익 인식  
cf. 예정이율보다 높은 할인률로 CSM이 과대되는 만큼 조기 이익인식 현상 강화
- 공정가치법 (공격적) 적용으로 보유계약 수익성 저하, 손실부담계약 전환 가능성 증가

### ▪ 경영자, IFRS 17 시행 초기 높은 수익성 유지 인센티브 발생

- IFRS 17에서 신계약 판매 시 계약 초기 IFRS 4 대비 높은 수익성 실현
- IFRS 17 시스템에서 신계약은 보험사 수익성 저하 현상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
- IFRS 4에서와 같은 매출 중심의 판매경쟁은 아니더라도  
IFRS 17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치열한 판매경쟁 발생 가능

→ 보험사 경영자, 단기 수익성을 위해 장기 수익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과당경쟁 지양 필요

## 6-1 IFRS 17 수익 인식 체계와 재무성과 정보 유용성

- IFRS 17 도입으로 보험사 **보험부채**(원가 → 시가) 및 **수익성**(현금주의 → 발생주의) **정보 유용성 개선**
  - 특히, IFRS 17의 경우 발생원천별(상품마진, 위험마진, 예측마진) 수익성 정보 제공 장점
  
- IFRS 17 下 **CSM 상각 수익과 기타 요소(RA, LRC, LIC) 수익&비용** 인식 기준 간 **일관성 부재**
  - CSM 수익은 서비스(급부) 제공량 기준, 기타 요소(RA, LRC) 수익 및 비용(LIC)는 CF 기준
  - cf. (CSM) 계약자 기대효익 관점, 보험사건 발생 확률 고려 X
  - (기타 요소) 보험사 기대비용 관점, 보험사건 발생 확률 고려 O
  
- 그 결과 외부정보이용자 관점에서 보험사 전체 수익성 정보 파악 곤란, **재무정보 유용성 저하**
  - 시뮬레이션 결과 IFRS 17 下 보험계약 수익성이 CF 발생규모와 역(逆) 관계를 보이며 변화
  - e.g.,  $(CSM+RA) / (CSM+FCF(RA+LRC)) =$  미래 수익성 대용치(?)
  
- IFRS 17 下 재무성과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고민 필요
  - 보험서비스 본질, 재무보고 단위 및 목적 고려 & 보험계약자 기대효익 재해석 등 필요

## 6-2 IFRS 17 수익 인식 체계와 단기성과주의

- (신계약) IFRS 4 대비 IFRS 17의 안정적 이익 인식 체계
  - 신계약비 : IFRS 4 & 보험업법 (7년) 조기상각 → IFRS 17 체계적 비용화(이연상각)
  - 보험이익 : IFRS 4 현금주의(보험료 수령액) → IFRS 17 발생주의(서비스 제공량)  
→ IFRS 17의 경우 보험이익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IFRS 4 대비 계약 초기 수익성 개선**
- (보유계약) 전환시점의 (공격적) 공정가치법 적용
  - 공정가치법 적용으로 소급법 대비 CSM 규모 감소
  - 전환시점에 미래 기대이익을 일시에 실현시킨 것과 동일한 재무적 효과
  - 보유계약의 미래 기대마진 감소 & 손실부담계약 전환 가능성 증가  
→ 장기적으로 보험사 **수익성 감소 및 재무성과 변동성 증가 우려**
- (시사점) 보험사 재무적 변화와 경영상 시사점
  - 재무성과 개선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재무건전성 개선은 잠재된 부정적 요인이 많아 유의 필요
  - IFRS 17하에서도 매출이 아닌 **수익성 중심의 판매경쟁은 지속 가능**, 경영자 유의 필요

## 6-3 보험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해석과 보험계약마진 상각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장서비스의 본질** : 보험금(현금흐름) 지급
  
- 보험계약자가 보장서비스로부터 얻는 **기대효익**
  - 보험사건 발생 확률이 보험계약자 기대효익(expected benefit)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e.g., (가입금액 1억원 종신보험) 건강한 20대 성인 vs. 80대 증중환자
  
- 보험계약자 **기대효익**(산출법) vs. 보험사 **기대비용**(투입법)
  - $\text{sum}(\text{개별 보험계약자가 제공받은 서비스량}) \neq \text{보험사가 제공한 총 서비스량}$   
cf. 재무보고 단위 가정(Economic Entity Assumption)
    - IFRS 17 下 재보험계약 : 원수보험사(재보험계약자) 재보험자산  $\neq$  재보험사 재보험부채
  
- ➔ 보험요소 및 투자요소 특성에 부합하는 이원화된 보험계약마진 상각 기준 마련 필요
  - [보장요소] 보험사 기대비용 관점(미래 현금흐름)에 기반한 보험계약마진 상각
  - [투자요소] 보험계약자 기대효익 관점에 기반한 보험계약마진 상각

